

孝宗初 金自點

*

-
- I. 머리말
 - II. 孝宗初 정국과 김자점 彈劾論의 전개
 - III. 1650년 查問使 파동과 逆賊 김자점
 - IV. 김자점 逆獄의 처리와 그 餘波
 - V. 맺음말

| 孝宗(r.1649~1659)은 ‘병자호란’ 이후 무너진 국가 질서를 재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국가 재건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에 효종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효종 즉위 직후 김자점에 대한 탄핵 여론이 들끓었는데, 이는 仁祖(r.1623~1649)의 정치 유산을 청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된 결과였다. 김자점은 인조의 부정적인 정치 유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당시 대다수 士類의 公敵과 다름없었다. 효종으로서 집권 초기 김자점을 제거한다면, 사류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문제는 효종 자신이 인조의 주도 아래 전개된 정치 파동의 결과 왕위에 올랐다는 점이었다. 김자점은 효종의 정통성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강변 옥사’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런 만큼 효종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대비하여 김자점을 처분해야 했다.

효종은 ‘公論의 수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김자점을 축출했지만, 김자점을 명목상 선왕 인조의 功臣으로 남겨두었다. 이를 통해 김자점 처분 논의가 인조 연간의

* 崔起準,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원, jeki619@naver.com
투고일: 2022. 10. 28. 심사완료일: 2022. 11. 28. 게재확정일: 2022. 12. 27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2.43.73>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 하지만, 1650년 사문사 파동의 결과 김자점에 대한 효종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김자점이 청나라를 끌어들이려 조선을 위협에 빠뜨리려 했다는 풍문에 기초해 대다수 여론이 김자점을 역적으로 규정했으며, 효종 역시 김자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처벌 요구를 사실상 방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효종은 1651년 12월에 김자점을 대역죄로 다스렸다. 이 과정에서 효종은 김자점을 극악무도한 역신으로 몰아세우면서도, 그가 선왕 인조의 공신이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효종의 양면적인 태도는 ‘역적 김자점’이라는 프레임이 선왕 인조 대로 소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효종의 바람과 달리 ‘역적 김자점’이라는 프레임에 기초해 강빈 옥사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나아가 강빈을 伸冤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었다. 김자점을 처분한 후 효종은 자신의 정통성 문제와 얽혀있었던 강빈 옥사가 다시 들추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비상한 조치가 필요했다. 1654년 ‘김홍욱 옥사’는 강빈 옥사에 관한 再論을 주장할 시 逆黨으로 규정해 처분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건이었다. 이를 통해 효종은 자신의 정통성을 위협할만한 논의를 수면 아래로 한동안 가라앉힐 수 있었다. 하지만, 효종의 언론관은 대다수 신료의 비판에 직면했으며, 정통성에 관한 시비 역시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여지를 남겼다.

Ⅰ 효종(孝宗), 김자점(金自點), 김자점 역옥(逆獄), 김홍욱(金弘郁), 강빈(姜嬪), 강빈 옥사(獄事), 인조(仁祖), 정통성(正統性), 공론(公論), 언론관(言論觀)

I.

1651년(효종 2)에 일어난 金自點 逆獄은 효종 초 정국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다. 김자점은 효종의 취약한 정통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소현세자 사후 후계자 문제를 두고 인조의 독선적인 결단을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인조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김자점의 출세 과정은 효종의 즉위 과정과 궤를 같이했으며, 효종 초 김자점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는 효종의 ‘정통성’ 문제와도 얽혀있었다. 그런데 효종 초 김자점 문제를 다룬 연구는 대개 1651년에 일어난 역옥의 결과를 바탕으로 효종 연간 북벌 정책의 추이와 新舊 정치세력의 대립 구도를 살피는 데 집중했다.

북벌 정책의 추이를 살핀 연구는 1652년(효종 3) 이후 조선이 군비 확충을 추진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는데, 1650년(효종 1) 조선에 대한 강경노선을 펼쳤던 攝政王 도르곤(1612~1650)의 사망과 더불어 김자점이 역모를 꾀하다 제거됨으로써 북벌을 막는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보았다.¹⁾ 즉, 효종 초 김자점을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을 북벌 시행을 위한 整地 과정이라고 이해했다. 한편 정치세력의 대립 구도를 살핀 연구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 山林의 존재에 주목하여 효종 초 김자점을 둘러싼 문제를 설명했다. 효종 초 김자점 탄핵 정국은 산림이 주도한 정치 쇄신 운동의 하나였으며, 김자점에 의해 왕권을 제약당했던 효종이 동조했다고 보았다.²⁾

기존 연구는 김자점 역육을 통해 효종 초 정국의 향방과 군비 증강책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하나의 설명틀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자점을 ‘절대 악’으로 설정했고 그에 맞추어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문제를 살폈다. 이로 인해 친청파 혹은 훈구의 상징인 김자점의 대항 세력으로서 山林의 존재가 부각된 반면, 국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
- 1) 차문섭, 「朝鮮朝 孝宗의 軍備擴充」(上,下), 『단국대학교논문집』 1.2집, 1967(『朝鮮時代 軍制研究』, 단국대출판부, 1973)에 재수록; 우인수, 「朝鮮 孝宗代 北伐政策과 山林」, 『역사교육논집』 15, 1990; 김세영, 「朝鮮 孝宗朝 北伐論 研究」, 『백산학보』 51, 1998; 최완기, 「17世紀의 危機論과 孝宗의 經濟政策」, 『국사관논총』 86, 1999; 송양섭, 「효종의 북벌구상과 군비증강책」, 『한국인물사연구』 7, 2007 등.
- 2) 오수창, 「仁祖代 政治勢力的 動向」, 『한국사론』 13, 1985; 우인수, 「제 3장 山林의 政治 參與와 政局 運營」, 『朝鮮後期山林勢力研究』, 일조각, 1999; 오항녕, 「朝鮮 孝宗代 政局의 變動과 그 性格」, 『태동고전연구』 9, 1993; 김세봉, 「仁祖 孝宗代 山人勢力的 形成과 進出」, 『동양학』 24, 1994; 「孝宗初 金自點 獄事에 대한 일고찰」, 2001; 이기순, 「제 5장 효종의 집권과 산림기용」, 『仁祖孝宗代政治史研究』, 국학자료원, 1998; 김용흠, 「조선후기 역모 사건과 변통론의 위상 - 김자점 역모 사건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0, 2006(『조선후기 정치사 연구 I』, 혜안, 2007에 재수록); 한지희, 「조선후기 孝宗代 政治論과 정국 동향-是非明辨論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41, 2010; 이희환, 「효종대의 정국과 북벌론」, 『전북사학』 42, 2013(『조선정치사』, 혜안, 2015에 재수록) 등.

국왕의 존재감과 역할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북벌과 왕권을 중심으로 효종의 정치적 선택을 조망한 연구도 있지만,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김자점이 북벌 정책의 최대 걸림돌이었다는 이해는 그가 1650년 사문사 파동을 획책했다는 의심에 기초했다. 하지만, 당시 청나라의 권력자 섭정왕 도르곤을 중심으로 놓고 사문사 파동을 바라보면 김자점과 청나라의 ‘커넥션’이라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강했다.³⁾ 즉, 사문사 파동의 전개 과정을 살폈을 때 김자점 제거 과정을 북벌을 위한 정지 작업이었다는 설명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효종이 김자점으로부터 되찾으려 했다는 ‘왕권’의 실체도 불분명했다. 김자점이 탄핵당한 시점은 효종이 즉위한 지 겨우 한 달 남짓 지난 때였다. 그 기간 효종과 김자점은 특별히 정치적으로 충돌하지도 않았고, 효종은 집요하게 김자점을 탄핵하는 대간에 맞서 그를 보호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즉, 효종 즉위 직후 김자점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김자점 제거과정을 왕권 강화라는 측면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효종 초 김자점에 대한 비판 여론은 궁극적으로 인조가 단행한 파행적인 국정 운영을 청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김자점을 처분하는 문제는 효종의 정통성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얽혀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김자점이 제거된 직후 강빈 옥사를 재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 강빈 신원론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1649년부터 1651년

3) 김용흠은 김자점이 청나라를 이용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 시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사문사 파동 당시 청나라의 태도를 통해 청나라가 김자점을 비호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통해 김자점이 청나라를 자신의 역모에 끌어들이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보았다(김용흠, 「제6장 對明義理論의 內面化와 變通論의 位相」, 앞의 책, 2007, 413~415쪽). 이명제는 황부왕 도르곤이 섭정의 지위에 있는 동안 자신을 중심으로 한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조선 왕실과의 혼사를 추진했고, 1650년 사문사 파동은 혼사 성사를 위한 장치라고 보았다(이명제, 「제 4장 도르곤의 집권과 조선의 외변화」, 『17세기 청·조선 관계 연구』,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사이 김자점 제거 과정에서 국왕 효종의 정치적 선택을 살펴보려 한다. 김자점 문제는 효종으로서 정통성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었던 만큼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 했다. 따라서 그동안 김자점 제거 과정에서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효종의 역할과 정치적 선택을 정통성 문제와 연결해 조명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김자점 제거 과정의 역사적 의미를 재고하는 한편, 효종이 자신의 정통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려 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 孝宗初

彈劾論

1649년(인조 27) 5월, 仁祖(r.1623~1649)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孝宗(r.1649~1659)에게는 삼전도 항복 이후 무너진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는 막중한 과제가 놓여있었다. 그런데, 국가 재건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에 효종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효종의 왕위 계승은 신료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1645년(인조 23) 4월, 昭顯世子(1612~1645)가 사망한 후 후계자 선정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宗法을 따라 元孫을 後嗣로 삼아야 한다는 대다수 신료의 여론과 달리, 인조는 權道를 내세우며 次子 鳳林大君을 후계자로 낙점했다.⁴⁾ 봉림대군이 세자로 책봉된 후 오래되지 않아 昭顯世子嬪 姜氏가 왕실을 저주하고 인조를 독살하려 했다는 죄목의 옥사가 일어났다. 옥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신료는 강빈에게 恩典을 베풀 것을 청했다. 하지만, 인조는 강빈과 그 일족에 대해 강경한 처벌을 고수했다.⁵⁾ 그 결과 강빈은

4) 이영춘, 「昭顯世子와 孝宗의 繼承權」, 『朝鮮後期 王位繼承 研究』, 집문당, 1998, 200~207쪽.; 우인수, 「제 3장 山林의 정치 참여와 정국운영」, 앞의 책 1999, 112~113쪽.; 이희환, 「제 3장 광해군 이후 현종대까지의 정국」, 앞의 책, 2015, 151쪽.

5) 김용덕, 「昭顯世子研究」, 『사학연구』 18, 1964, 435~449쪽.; 이왕무, 「昭顯世子嬪 姜嬪의 獄事와 伸冤」, 『역사와담론』 69, 2014, 125~130쪽.

賜死 당했고, 소현세자의 세 아들 가운데 첫째와 둘째 아이는 유배지에서 사망했다.

강빈 옥사는 봉림대군의 왕위 계승을 위협할 만한 요소가 대부분 제거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조가 보여준 독단적인 행보는 조야의 신료와 식자층의 비판을 받았다.⁶⁾ 효종은 즉위 과정에서 축적된 조야의 불만을 달래는 한편, 정국 운영을 위한 명분을 확보해야 했다. 이를 위해 즉위 직후 金尙憲(1570~1652)과 더불어 金集(1574~1656)·宋浚吉(1606~1672)·宋時烈(1607~1689) 등을 徵召 했다.⁷⁾ 효종이 김상헌과 산림을 불러들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斥和와 反淸을 대표했기 때문이었다.⁸⁾ 주지하듯이 호란의 상흔을 극복하고 지배 질서를 재건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한 것은 북벌 담론이었다. 효종은 김상헌과 산림을 등용함으로써 자신의 국정지표가 ‘復讎雪恥’임을 드러내려 했다.

한편, 16세기 이후로 국왕과 집권 세력은 명망 있는 산림 인사를 통해 정국 운영의 명분을 확보하려 했다.⁹⁾ 산림은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지만, 학문적 권위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즉, 효종은 산림 징소를 통해 자신의 국정지표를 명확히 하는 한편, 賢人을 우대하는 모습을 연출하여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했다.

효종에게 김상헌과 산림의 징소를 건의한 대신 중 한 명은 바로 영의정 金自點(1588~1651)이었다.¹⁰⁾ 김자점은 친청파이자 훈신의 핵심 인물로 산림과 대척점에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통설적 이해와는 달리 김자점은

6) 이영춘, 앞의 책, 1998, 210~212쪽.

7) 『孝宗實錄』 권 1, 효종 즉위년 5월 14일.

8) 우인수, 「제 3장 山林의 정치 참여와 정국운영」, 위의 책, 1999, 112~118쪽; 허태용, 「동아시아 중화질서의 변동과 조선왕조의 정치사상적 대응」, 『역사학보』 221, 2014, 45~46쪽.

9) 우인수, 「제 1장 산림의 대두와 세력 기반」, 앞의 책, 1999, 13~20쪽.

10) 『白湖全書』, 「付祿」 2, 行狀 上 “己丑四月 仁祖大王昇遐 孝宗大王嗣位……領議政金自點 淸 前參議金集前持平宋浚吉宋時烈諮議權認前師傳李惟泰等 傳諭道臣 使之上來”

인조 말년부터 송시열을 포함한 산림의 등용을 청했다.¹¹⁾ 김자점이 산림의 등용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자신의 불안정한 정치적 입지를 보완하기 위함이었다.

김자점은 인조반정에 참여한 공신 출신이었지만, 非 문과 출신으로 초기에 정치 기반이 다소 빈약했다.¹²⁾ 이러한 김자점이 정치적으로 크게 浮上한 시기는 인조 재위 후반기부터였다. 후계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정치 파동 가운데 김자점은 인조의 결정을 지지하는 몇 안 되는 신하로서 인조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신하였다.¹³⁾ 그뿐만 아니라 김자점은 손자 金世龍을 인조와 귀인 조씨 소생의 孝明翁主(1637~1700)와 혼인시킴으로써 왕실과의 婚脈까지 구축했다.¹⁴⁾ 이러한 과정을 통해 김자점은 명실상부 인조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위치를 점했다.

김자점의 권력은 철저히 인조의 권위와 정치적 후원에 기초했는데, 이는 달리 말해 인조가 不在할 시 그 권력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의미했다. 실제로 대다수의 사류는 김자점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는데, 병자호란 당시 김자점이 都元帥라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전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었다.¹⁵⁾ 여기에 더해 그가 사류 대다수 여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조의 정치적 결단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점도 한몫했다.¹⁶⁾

11) 『承政院日記』 103책, 인조 26년 10월 13일 19/19 “上曰 方今有著名巖穴之士乎 自點

曰 權謬·宋時烈·宋浚吉·李惟泰等 篤學力行 處窮守道 誠致此類 輔導元孫 則必有裨益”

12) 오수창, 앞의 글, 1985, 112쪽.

13) 일례로, 강빈의 옥사 당시 인조는 강빈의 처분을 두고 다른 대신의 미온적인 태도에 깊은 불신과 불만을 드러낸 반면에 김자점을 상당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와 함께 강빈의 처분을 논했다(『仁祖實錄』 권 47, 인조 24년 2월 1일).

14) 『仁祖實錄』 권 48, 인조 25년 8월 16일.

15) 『仁祖實錄』 권 43, 인조 20년 2월 2일 “正言河潛上疏曰……金自點身爲元帥 手握重兵 使君父窘於去國 國勢陷於顛危 罪通于天 萬死難贖 殿下賞其首領 薄示竄罰 曾未數年 反加寵用 畀以司馬之長……以自點之罪之重 而尊寵而重任之 則死者有知 張紳金慶徵之遺魂 必且號咷於泉壤之下矣”

16) 김류나 최명길 역시 병자호란을 전후해 사류의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인조 재위

즉, 김자점은 인조 사후를 대비해 자신에 대한 사류의 부정적인 인식을 反轉해야만 했고 이 때문에 인조 재위 후반기부터 김상헌을 위시한 산림의 등용을 주장했다.¹⁷⁾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자점은 인조가 승하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김자점은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1649년 6월 16일, 사헌부 지평 金弘郁(1602~1654)과 장령 李晳(1603~1685)의 遞職 상소를 시작으로 김자점 탄핵 정국이 전개되었다.¹⁸⁾ 김홍욱 등은 김자점이 公議를 가볍게 여기고 私利를 꾀했으며, 자신의 지위를 믿고 방자하게 搢紳을 옥보인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22일에는 兩司가 김자점을 탄핵하는 劄啓를 올렸다. 양사는 김자점이 선왕의 委任을 저버리고 사치와 방종을 일삼았다면서 그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청했다.¹⁹⁾ 김자점의 죄를 물어야 한다는 대간의 요구에 대해 효종은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워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비쳤다.

답하시기를, “선왕께서 승하하신 지 오래지 않았는데 先朝의 대신을 갑자기 논핵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매우 불가하다. 하물며 勳勞와 忠績이 특히 한때에 으뜸인 자이겠는가? …금일 모두 出仕하라는 청은 실로 뜻밖에 나온 것으로 더욱 부당하다. 김홍욱과 이석을 우선 遞差하고 그 밖은 아뢴 대로 하라.”²⁰⁾

후반기 김자점과 달리 김류와 최명길 두 사람은 반정공신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인조의 결정에 附和雷同하지 않았다. 일례로, 김류는 元宗 추숭을 둘러싼 논쟁과 강빈의 옥사 당시 정당함을 지키고 동요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仁祖實錄』 권 49, 인조 26년 윤3월 5일). 최명길은 1639년(인조 17)에 일어난 저주 사건을 빌미로 정명공주를 제거하려던 인조에 맞서 옥사의 확대를 강력하게 반대한 이력이 있었다(『燃藜室記述』, 『孝宗朝故事本末』). 이 외에도 두 사람 모두 인조 말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효종 즉위 직후 사류의 비판이 김자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17) 『黨議通略』, 「仁祖朝至孝宗朝」 “方宋時烈等有盛名 勳臣金自點元斗杓李厚源 爭相薦引 許爲主人”

18) 『孝宗實錄』 권 1, 효종 즉위년 6월 16일.

19) 『孝宗實錄』 권 1, 효종 즉위년 6월 22일.

효종은 國喪 중에 선왕의 대신 가운데 공적이 가장 뛰어난 신하를 탄핵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논의를 처음 제기한 김홍욱 등을 체차했다. 이와 함께 대간의 잘못된 논계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문관을 질책했다.²¹⁾ 이처럼 효종은 대간의 탄핵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의 전개 자체는 효종으로서 국정 운영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이기도 하였다.

효종은 즉위 직후 선왕 인조의 廟號 선정을 두고 대간과 마찰을 빚었는데, 인조의 묘호를 재고해야 한다는 홍문관과 사간원에 대해 엄중한 批答을 내리며 질책했다.²²⁾ 이로 인해 사헌부와 사간원은 국왕의 ‘언론관’을 우려하는 상소가 올라왔다.²³⁾ 대다수 신료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즉위한 효종으로서 묘호 선정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적으로 충분히 부담될 만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김자점에 대한 탄핵 여론은 西·南 당색을 초월해 제기되었다.²⁴⁾ 효종으로서 대간의 重論을 수용해 김자점을 처분한다면, 묘호 선정 문제로 촉발된 조정의 우려를 다소 해소할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탄핵 정국의 전개 자체는 표면적으로 효종에게 불리한 국면은 아니었다. 문제는 김자점이 효종의 정통성과 직결된 강빈 옥사에 깊이 간여했다는 점이었다.

대간은 표면적으로 김자점 개인의 자질과 부패를 문제 삼아 탄핵 논의를 전개했지만, 궁극적으로 인조의 부정적인 정치 유산을 청산하려 했다.²⁵⁾

20) 『承政院日記』, 효종 즉위년 6월 16일 “答曰 實天未久 遽論先朝大臣 已極不可 況動勞忠績 獨冠一時者乎……今日之竝請出仕 實出於意慮之外 尤爲不當 金弘郁李哲爲先遞差 其他依啓”

21) 『孝宗實錄』 권 1, 효종 즉위년 6월 16일.

22) 인조의 묘호 선정을 두고 홍문관 부수찬 俞榮는 이미 ‘仁宗’이 있는 만큼 ‘仁’을 사용할 수 없다며 재고를 청했다. 응교 沈大孚는 ‘祖’ 대신 ‘宗’을 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孝宗實錄』 권 1, 효종 즉위년 5월 23일).

23) 『孝宗實錄』 권 1, 효종 즉위년 6월 19일; 7월 2일; 7월 5일.

24) 오향녕, 앞의 글, 1993, 22쪽.

25) 김용흠, 앞의 글, 2006, 245쪽.

대간은 탄핵 정국 동안 김자점이 ‘선왕의 호의를 저버린 죄인’이자 ‘나라를 그르친 죄인’이라는 점을 부각했다.²⁶⁾ 김자점이 인조의 부정적인 유산을 상징하는 대표 인물이었던 만큼, 김자점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그를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후원했던 인조의 정치적 실책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려 했다.

반면에 효종은 김자점 탄핵 논의가 자칫 인조 재위 후반기 정치 파동을 재조명하자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 당시 세간에는 김자점과 그의 사돈인 귀인 조씨가 강빈 옥사를 조작했다는 의심이 과다했다.²⁷⁾ 그뿐만 아니라 대간은 김자점과 귀인 조씨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인조의 후계 문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²⁸⁾ 효종으로서 즉위 직후 인조의 후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 달갑지 않았다. 더욱이 소현세자의 막내아들인 李石堅(1644~1665)이 생존해 있었던 상황에서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자점을 선불리 처분했다가 인조 재위 후반기 정치 파동을 재조명하자는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을 대비해야 했다.

효종은 최대한 인조 연간의 정치 문제를 들추어내지 않는 방향으로 탄핵 정국을 풀어가야 했는데, 효종이 선택한 출구전략은 바로 ‘公論의 수용’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었다. 효종은 김자점 탄핵 논의가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에 김자점을 파직했다.²⁹⁾ 대간의 탄핵 요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효종이 김자점을 파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6) 『承政院日記』 106책, 효종 즉위년 6월 22일 26/27; 7월 4일 8/16; 9월 14일 12/15.

27) 『推案及鞫案』 권 7, 「신묘년, 김자점 등 역적 사건 심문기록(1)」, ‘영이에 대한 내수사의 심문기록(11월 23일)’(본고에서 인용한 『推案及鞫案』은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정서화 및 DB기반 구축”의 원문자료와 이선아 역주, 『(국역)추안급국안 192021』, 흐름 2014)을 참고했다) “水刺知味之事 謂吾作俑云 而瀋陽學得之事 歸咎於我身 極爲冤痛云云爲白齊 姜賊咀呪之時 諸人之死 亦爲歸咎於我身 亦極冤痛 云云爲白齊”

28) 『孝宗實錄』 권 1, 효종 즉위년 6월 22일 “兩司啓曰……其在大威之日 自點所爲 尤不厭衆心 未有宣召之事 而擅招在外勳臣 將欲同受顧命 有若希冀定策者然 使宮奴背負翁主 穿大道而行 直入宮中”

29) 『備邊司臚錄』 13책, 효종 즉위년 8월, 座目.

답하시기를, “윤허하지 않겠다. 전 영의정의 일은 비록 사소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대신을 파직하는 벌을 내렸으니 이미 할 만큼 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역시 간관의 청을 따라 공론의 도를 널리 베푼 것이 아닌가?”³⁰⁾

효종은 김자점의 혐의는 ‘사소한 잘못’에 불과하지만, 공론을 펴기 위해 부득이하게 파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효종은 ‘공론의 수용’을 명분 삼아 김자점을 처분함으로써 명목상이지만 김자점을 선왕 인조의 훈신으로 남겨 두려 했다. 이를 통해 선왕 인조에 대한 情理를 지키는 한편, 탄핵 논의가 선왕 대의 정치 사건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김자점을 선왕의 죄인으로 공인받으려 했던 대간으로서 효종의 처분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양사는 선왕의 죄인인 김자점의 官爵削奪과 遠竄을 청하며 논계를 이어갔고, 석 달여 뒤 효종은 대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삭탈관직과 門外出送의 처분을 내렸다.

답하시기를, “군신 간 情意가 相孚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그대들이 하려는 바는 갈수록 이러하니 의지할 만한 바가 없고 또 그 박함이 보인다. 내가 특별히 削職을 윤허하는 명을 내린 것은 私心を 억제하고 못사람의 마음을 위무하려는 지극한 뜻이다. 그대들은 물러가 그 뜻을 생각해보고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³¹⁾

효종이 김자점에게 추가 처분을 내린 이유는 어디까지나 私心を 억누르고

30) 『承政院日記』 108책, 효종 즉위년 9월 13일 “答曰 不允 前領議政事 雖有微過 大臣罷職之罰 已云極矣 此亦非循諫官之請 而恢張公論之道乎”

31) 『承政院日記』 109책, 효종 즉위년 11월 9일 “答曰 君臣之間 貴在情意相孚 而爾等之所爲 愈往迺爾 顧無所持矣 亦且見其薄矣 予之特允削職之命 所以抑私心 而慰群情之至意也 爾等 退而思之 毋庸更煩”

못사람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함이었다. 대간으로서 김자점의 파직에 이어 관작 삭탈과 문외출송의 처분을 얻어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처분이었다. 결국, 김자점 탄핵을 둘러싼 양사의 논쟁은 해를 넘겼다.

이런 가운데, 조정 내에서는 김자점의 당여를 처분하는 문제로 논란이 일어났다. 1649년 9월 13일, 사헌부 집의 송준길은 김자점에게 빌붙어 土風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申冕(1607~1652)·李之恒(1605~1654)·嚴鼎耆(1605~1670)·黃辰(1604~1656) 등을 推考할 것을 청했다.³²⁾ 그런데 송준길의 주장은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지평 任重(1618~1657)과 장령 尹瑊(1599~?)은 송준길이 김자점의 당여로 보기 어려운 인물을 그 당여로 지목했다고 비판했다.³³⁾ 김집의 문인과 교류했던 대사헌 金南中(1596~1663)도 친분을 문제 삼아 죄를 논하려는 송준길의 주장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³⁴⁾ 결과적으로 송준길의 논쟁은 黨色과 학맥을 초월해 김자점을 탄핵을 위해 같은 목소리를 냈던 대간의 논의를 양분시켰다.

10월 24일, 사태를 관망하던 효종은 備忘記를 내려 신면과 이지항 등을 파직하고 찬출하도록 했다. 효종의 처분은 사실상 송준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었는데, 정작 논의를 제기한 송준길은 효종의 처분을 반기지 않았다. 송준길은 곧장 효종에게 신면과 이지항 등의 처분 수위를 낮추어 달라고 청했고, 김상헌의 중재를 통해 신면과 이지항 등에 대한 처분이 다소 완화되었다.³⁵⁾ 대간의 논의가 양분된 상황에서 효종의 일방적인 처분은 논의를 처음 제기한 산림 인사 특히 김집 계열의 과격성을 부각하기 충분했다. 후에 산림을 비판하는 논자는 이때의 激濁揚清이 오히려 조정을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³⁶⁾ 즉, 송준길이 한발 물러선 이유는 효종의 일방적인 처분에

32) 『孝宗實錄』 권 1, 효종 즉위년 9월 13일.

33) 『承政院日記』 108책, 효종 즉위년 9월 16일 12/20; 효종 즉위년 9월 16일, 25/30.

34) 『孝宗實錄』 권 2, 효종 즉위년 9월 13일.

35) 『孝宗實錄』 권 2, 효종 즉위년 10월 26일.

36) 산림의 과격함을 지적한 대표적 인물은 閔應亨(1578~1662)과 金佐明(1616~1671)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애초에 송준길의 논제는 탄핵 정국에 편승해 정치적으로 마찰을 빚었던 인물을 제어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³⁷⁾ 신면과 이지항 등은 송준길을 위시한 김집 계열 인사와 정치적으로 마찰을 빚었던 인물이었다. 이지항과 엄정구는 인사 문제의 폐단을 지적하는 김상헌의 의견에 異論을 제기했었다.³⁸⁾ 그로 인해 김상헌과 정치적으로 연대한 김집 계열의 攻駁을 받았다.³⁹⁾ 신면은 인조 말년에 吏曹銓郎 薦望 문제로 김집의 조카 金益熙(1610~1656)와 충돌한 이력이 있었다.⁴⁰⁾ 효종이 송준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일방적인 처분을 내린 이유는 자신의 징소에 응해 출사한 산림에게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주려는 조치였다. 실제로 김자점이 끝내 조정에 복귀하지 못한 것과 달리, 그의 당여로 지목된 신면과 이지항 등은 송준길을 포함해 김집과 송시열이 대내외적인 문제로 인해 조정을 떠난 이후에 모두 絀用 되었다.⁴¹⁾

이었다. 민응형은 근래 조정의 의논이 흩어진 것은 山人이 소략한 재주로 擊攘을 앞세웠기 때문이라며 비판했다(『孝宗實錄』 권5, 효종 1년 10월 6일). 김좌명은 격앙의 논의는 온전한 公心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孝宗實錄』 권6, 효종 2년 1월 11일).

- 37) 후에 남인 집권기에 편찬된 『顯宗實錄』 현종 1년 6월 16일자 기사에는 신면을 위시한 네 인물 모두가 김자점의 당여로 몰려 억울하게 화를 입었다고 서술했다(『顯宗實錄』 권 3, 현종 1년 6월 16일). 하지만, 후에 서인이 집권한 후 개수한 실록에서는 이러한 서술이 삭제되었다(『顯宗改修實錄』 권 3, 현종 1년 6월 16일). 또한, 少論係 李建昌(1852~1898)은 신면과 이지항 등이 김자점에게 영합했다고 평했다(『黨議通略』, 「仁祖朝至孝宗朝」).
- 38) 『孝宗實錄』 권 1, 효종 즉위년 8월 19일.
- 39) 김상헌과 김집 계열의 인사들은 反淸의 상징이었던 스승을 중심으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우인수, 「제2장. 산림의 정국 막후자로서의 기능」, 앞의 책, 1999, 78~79쪽).
- 40) 정만조, 「17세기 중반 漢黨의 정치활동과 國政運營論」, 『한국문화』 23, 1999, 113~114쪽.
- 41) 김집은 대동법 시행을 두고 김육과 마찰을 빚다가 1650년(효종 1) 1월에 낙향했다(『孝宗實錄』 권 3, 효종 1년 1월 21일). 송시열도 김집의 뒤를 이어서 사직을 청한

즉, 김자점의 당여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효종의 처분은 김자점을 축출하기에 앞서 그 당여를 정리하기 위한 사전 整地 작업은 아니었다.

종합해보면, 김자점 탄핵 정국은 효종 즉위 후 대간을 중심으로 인조의 정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 전개되었다. 하지만, 인조의 파행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왕위에 오른 효종으로서 대간의 요구를 선불리 수용할 수 없었다. 효종은 의도적으로 탄핵 논의의 완급을 조절하는 가운데 김자점을 명목상이지만 선왕의 훈신으로 남겨두었다. 김자점 탄핵 논의가 효종 자신의 정통성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김집과 그 문인들은 탄핵 정국을 기회 삼아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인물을 김자점의 당여로 몰아 제어하려 했다. 이로 인해 김자점 탄핵을 위해 일치되었던 대간의 논의가 양분되기도 했다. 이처럼 김자점 탄핵을 둘러싼 중앙의 정치 지형은 상당히 복잡했는데, 해가 바뀌어 청나라라는 외부 요인이 개입하면서 김자점 탄핵 정국은 큰 변화를 맞았다.

. 1650 查問使 逆賊

김자점의 삭탈관작과 문외출송이 결정된 후에도 대간은 김자점의 遠竄을 연일 청하면서 탄핵 정국을 이어갔다. 그런 가운데 1650년(효종 1) 2월 11일, 효종은 ‘公議를 막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김자점을 강원도 洪川縣에 中途付處하도록 했다.⁴²⁾ 중도부처의 처분 역시 대간의 요구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었지만, 대간은 김자점에 관한 논계를 이내 정지했다. 대간이 김자점

후 물러갔다(『孝宗實錄』 권 3, 효종 1년 1월 22일). 송준길은 한 달여 뒤 청나라 사신이 조선 조정을 사문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 사직하고 낙향했다(『孝宗實錄』 권 3, 효종 1년 2월 18일).

42) 『承政院日記』 111책, 효종 1년 2월 11일 11/26 “승啓 金自點遠竄事 答曰 經年論執 愈往乃爾 私情雖切 公議難遏 予不獲已 俯從群情 中道付處”

에 관한 논계를 정지한 이유는 당시 불안정했던 對淸 정세 때문이었다.

1650년 2월 8일, 북경에 체류 중이던 謝恩使 仁興君 李瑛(1604~1651)과 副使 李時昉(1594~1660)은 청나라가 칙사를 보내 조선 조정을 查問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⁴³⁾ 효종은 비변사를 소집해 청나라가 사문사를 보내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비책을 논했다. 그 자리에서 좌의정 趙翼(1579~1655)은 ‘간사한 자’가 조정을 포함하여 이러한 사단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⁴⁴⁾ 조익의 발언은 정황상 김자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세간에는 김자점이 淸譯을 통해 조정을 위협할 계획을 세운다는 소문이 돌았다.⁴⁵⁾ 김자점은 대청 외교 사안을 처리하면서 청역과 자주 교류했으며, 청역과의 관계를 자신의 정치 자산으로 삼았다.⁴⁶⁾ 이 과정에서 김자점과 그 가문은 역관 가문과도 혼인 등의 인적 교류를 맺었다.⁴⁷⁾ 조익의 발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듯했다. 하지만, 소문을 입증할 명확한 물증이 없었던 만큼 그의 주장은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1650년 3월 1일, 청역 李馨長이 사은사가 보낸 密啓를 전했는데, 그에 따르면 청나라는 조선이 倭情을 구실로 城池 수축을 도모한 일, 사은사가 올린 表文에 ‘皇父攝政王’을 ‘攝政王’으로만 기재한 일 등을 문제 삼았다. 그 가운데 청나라는 효종이 김자점을 축출하고 반청 인사를 등용한 이유를

43) 『孝宗實錄』 권 3, 효종 1년 2월 8일.

44) 『孝宗實錄』 권 3, 효종 1년 2월 8일 “上曰 頃者南方有海震之變 予甚憂懼 今者淸使至於六人 偕來 其意何如……翼曰 是必我國奸細之人重爲構誣也”

45) 『孝宗實錄』 권 1, 효종 즉위년 6월 22일 “時 都下多言 自點自被罪後 潛通虜中 以爲藉彼脅我之計”

『宋子大全』 권 204, 「諡狀」, 迂齋李公諡狀. “金自點 使其徒 密以告於淸人 亦送長陵誌文 蓋誌文不書僞號故也”

『石屏集』 권 4, 「疏」, 再疏. “一時無賴之駟儂 譯官之狡愚者 人莫不以自點之腹心云云 而其中李彥彪 自點之社狐也”

46) 오수창, 앞의 글, 1985, 114쪽.

47) 백옥경, 「朝鮮後期 譯官의 政治的 動向研究」, 『국사관논총』 72, 1996, 146~147쪽.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사은 부사 이시방은 김자점이 선왕의 侍藥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파직당했다고 해명했다.⁴⁸⁾ 청나라는 이시방의 해명을 수용하지 않았고, 사신을 보내 김자점 탄핵을 주동한 인물을 색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했다.

효종은 사은사 일행이 보낸 밀계를 접수한 지 사흘 만에 김자점의 두 아들인 전 한성부우윤 金鍊(1605~1651)과 전 이조정랑 金弼(1620~1651)을 外職으로 내보내기로 했다.⁴⁹⁾ 영중추부사 李敬輿(1585~1657)는 품문만으로 김자점의 두 아들을 외직으로 내보내는 것을 우려했는데, 효종은 김자점을 보전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⁵⁰⁾ 그런데 『孝宗實錄』은 효종의 처분을 두고 김자점과 청나라를 이어주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⁵¹⁾ 즉, 김자점을 보전하려 한다는 효종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한편, 조선 조정은 청나라가 탄핵 주동자를 색출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그 자리에서 부제학 趙錫胤(1606~1655)은 김자점을 탄핵한 것은 나라의 公論이니 주동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효종은 한두 사람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⁵²⁾ 이처럼 효종은 청나라가 김자점 문제를 추궁할 것이라는 소문만으로도 상당한 위기감과 불안감을 나타냈다.

1650년 3월 5일, 서울 근교에 당도한 사문사는 동행한 내관 羅峯을 통해

48) 『孝宗實錄』 권 3, 효종 1년 3월 1일 “彼曰 然則三公以下內外官仍在前職者 歷數以對 答曰……金自點則爲內局都提調 當先王大漸之日 不察於侍藥 故罷其本職”

49) 『孝宗實錄』 권 3, 효종 1년 3월 4일.

50) 『孝宗實錄』 권 3, 효종 1년 3월 4일 “敬輿曰 自點烏得無罪 而至於近日所疑 則事無其迹 難以處之 上曰 非致疑也 乃欲以全之也”

51) 『孝宗實錄』 권 3, 효종 1년 3월 4일 “是時 訛言競起 皆疑金自點父子 以我國事洩漏於清人 而上亦疑之 欲出其子鍊弼等於外 以絕其交通之路”

52) 『孝宗實錄』 권 3, 효종 1년 3월 5일 “上曰……則當此之時 欲掩護一二人 不知終至於何地也 予不幸爲君於危難之際 宗社在上 而今遇此變 將如之何 仍愴然久之”

정식으로 사행의 목적을 통지했다. 나업의 보고에 따르면, 청나라는 조선 조정을 사문하는 일 외에도 황부섭정왕 도르곤과 조선 왕실 여인의 婚事를 추진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다.⁵³⁾ 도르곤이 조선 왕실과 혼사를 추진한 이유는 ‘섭정왕’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었다. 도르곤은 황제와는 별개의 정치 질서를 구축하려 했고, 이를 위해 혼인 정책을 활용했다. 조선 왕실과의 통혼을 추진한 배경 역시 조선을 자신의 세력 아래 두려는 의도가 다분했다.⁵⁴⁾ 문제는 ‘조선이 순순히 혼사에 응할 것인가?’였다.

공교롭게도 효종이 즉위한 후 조선의 상황은 도르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조선은 왜정을 구실삼아 성지 수축을 시도했으며 인조의 구신을 쫓아내고 반청인사를 새롭게 등용했다. 조선의 행보는 정축약조 체제 아래에서 청나라가 시비를 걸기에 충분했다.⁵⁵⁾ 결국, 조선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도르곤은 조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사문의 일을 활용했다. 청나라는 사문사 파견을 결정한 후 조선 측에 사문에 관한 내용만을 전했을 뿐, 혼사에 관한 이야기는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이는 조선 조정이 혼사에 관한 일을 미리 알게 된다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⁵⁶⁾ 물론, 청나라가 압박 일변도로 조선에 혼사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사문사는 조선 조정에 ‘만약 공주의 婚期가 차지 않았다면, 宗室 여인 가운데 적합한 자를 골라도 무방하다.’라는 뜻을 전했다.⁵⁷⁾ 이는 효종과 조선 조정의 부담을 어느 정도

53) 『孝宗實錄』 권 3, 효종 1년 3월 5일.

54) 이명제, 앞의 글, 2021, 163쪽; 173~174쪽.

55) 김선혜, 「入關 前後 淸과 朝鮮의 通婚과 侍女 問題」, 『중국사연구』 91, 2014, 254~255쪽.

56) 『孝宗實錄』 권 3, 효종 1년 3월 5일 “上使峩言其所聞 峩曰 彼云婚媾事 汝未及詳知 故今始明言之 汝歸告國王 又以國王之意 來報於弘濟院……若婚媾既成 則群臣不敢欺侮 而大國亦當專信 但國王必不能獨斷 將問於群臣 群臣必曰 豈可與此輩結婚 云爾 故不欲使之先知耳”

57) 『孝宗實錄』 권 3, 효종 1년 3월 5일 “峩曰……婚媾事則臣應之曰 公主之時存者 彼曰 公主年幼則雖擇於宗室中可合者 亦無妨”

줄여주어 혼사를 성사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다.

효종과 조정으로서 청나라의 혼사 요구는 정치적으로 부담일 수밖에 없었지만, 사문의 일이 원만하게 풀리기를 기대하며 혼사에 응했다. 사문사는 조선이 혼사를 수용하자 크게 기뻐하며 관대한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뜻을 비쳤고, 효종은 사문의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는 기대감을 표했다.⁵⁸⁾ 실제로 1650년 3월 8일과 9일 양일간 조선 조정에 대한 사문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사문사의 최대 관심은 양국의 혼사에 있었다. 사문사는 왜정을 가탁한 일과 표전 문제 등의 책임을 물어 영의정 李景奭(1595~1671)과 예조판서 趙綱(1586~1669)을 死罪로 결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처분을 즉각 결정하지 않고 효종에게 의견을 구했다. 효종은 사문사의 요청을 수차례 고사한 끝에 이경석과 조경의 죄를 감해 변방에 안치해줄 것을 청했고, 사문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⁵⁹⁾ 처분을 결정한 직후 사문사는 효종에게 ‘임금이 바라는 대로 따라주었는데, 우리가 바라는 바는 어찌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라는 말을 남겼다.⁶⁰⁾ 즉, 사문사의 배려 아닌 배려는 조선 조정에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줌으로써 더 수월하게 혼사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한편, 대대적인 추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김자점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가 없었다. 사문사는 귀국 직전에서야 ‘김자점이 불의한 일을 저질러 파직되었다.’라는 조선 조정의 해명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하고, 김상헌 등을 등용한 일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⁶¹⁾ 사문사가 김자점에 관한 사안을 집요하게 추궁하지 않은 까닭은 도르곤과 조선왕실의 통혼이라

58) 『孝宗實錄』 권 3, 효종 1년 3월 7일 “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問曰 昨日羅業以許婚之意 往言于弘濟院 則彼有喜色 且自言金尙憲金集等 將不舉論 使我國處之 趙綱雖不可不問 豈至於深治乎 李曼盧協則或於白馬山城安置云 此皆緩之之意也”

『孝宗實錄』 권 3, 효종 1년 3월 7일 “上謂都承旨尹絳曰 快許婚事 則渠輩甚喜 查問亦不行於今日 事機頗緩矣 以此意傳諭大臣”

59) 『孝宗實錄』 권 3, 효종 1년 3월 8일; 3월 9일.

60) 『孝宗實錄』 권 3, 효종 1년 3월 9일 “淸使曰 王之所欲 俺等已從之 俺等所欲 王何不念耶”

61) 『孝宗實錄』 권 3, 효종 1년 3월 16일.

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었다. 사문의 일은 어디까지나 혼사의 성사를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 내세운 구실이었다. 청나라는 이후에도 비슷한 방식을 통해 조선에 필요한 것을 요구했는데, 1651년 8월 말에 청나라는 조선이 왜정을 가탁한 문제로 다시 칙사를 보내 힐문했다.⁶²⁾ 이때에도 사문의 일은 조선을 압박하기 위한 구실이었을 뿐, 진짜 목적은 侍女를 차출하는 것이었다.

김자점이 청나라를 끌어들이어 사문의 일을 일으켰다는 소문은 근거 없는 飛語에 불과했다. 하지만, 김자점에 대한 조야의 의심은 사그라지지 않았는데, 일각에서는 ‘김자점과 그 당여가 일이 잘못될 것을 우려해 미리 사문의 일을 완화하도록 손을 썼다.’라고 의심했다.⁶³⁾ 그러나 김자점이 청나라를 끌어들이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사문의 일을 활용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겠지만, 이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결국, 김자점에 대한 의심은 날로 깊어져 조정 내에서 逆賊 김자점을 단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사문의 일이 종결된 지 석 달 가까이 지났을 때, 공조좌랑 李回實(1594~1669)의 상소가 올라왔다. 그는 김자점이 사문의 일을 초래하고 不軌를 도모했다며 성토했다. 이와 더불어 양사가 사문사 앞에서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⁶⁴⁾ 이회보의 상소가 올라온 후 수일 후 양사는 김자점에 관한 논계를 재개했다. 양사 역시 김자점을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 ‘종사에

62) 『孝宗實錄』 권 5, 효종 1년 9월 8일. “淸使曰……今行所幹 專在侍女 本國若選送色美者 則皇父王必見而悅之 向之所疑 皆可氷釋”

63) 『孝宗實錄』 권 8, 효종 3년 3월 2일 “先是 逆賊供辭 援引警長謀逆之狀狼藉 有藉彼脅我之計……鉞對以 冕勸我 使李警長潛通淸國請兵 來駐灣上 仍執山人而去 俺乃從其計矣 及北使以查事出來 事機先洩 人多指疑 冕恐事覺 又使俺通于警長而止”

64) 『石屏集』 권 4, 「疏」, 再疏. “且伏見查問時啓草有曰 逐去前日盡誠之舊臣……查問中主意專在於舊臣 則所謂舊臣 果是誰耶……北京之查問 亦莫不在於自點 自點不爲之行間 則北京何故而督過之也……賊已判然 事已彰著 而此時兩司 獨不在於查問之席耶 賊吾君圖不軌之實狀 兩司多官 義當痛辨於查問時 可也”

관계된 죄인[罪關宗社]으로 몰아가며 김자점의 絶島安置를 청했다.⁶⁵⁾ 탄핵 정국 당시 대간이 열거한 김자점의 죄목이 김자점 개인의 자질 문제와 비리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때 김자점에 대한 논의의 무게는 크게 달라졌다.

이회보 등이 김자점에 관한 논의를 제기한 후 김자점을 역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김자점 측으로서도 대응해야만 했다. 김자점의 손자인 낙성위 김세룡은 근래 자신의 조부를 무합하는 설이 유포된다면서 효종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효종은 다음과 같은 답을 내리며 김세룡을 안심시켰다.

답하시기를, “소를 살펴보니 그 뜻을 잘 알겠다. 前日에 李葩의 密疏에 관한 설은 마땅히 엄히 국문하고 查出해야 했으나, 내가 이미 그 거짓됨과 광망함이 무상하기 이를 데 없다고 洞鑑했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국문하지 않았다. 지금 다시 운운하는 것은 매우 놀랍고 괴이하니 寒心함을 이길 수 있겠는가? 나의 뜻이 이와 같으니 경들은 많이 변명할 필요가 없고, 염려치 말라.”⁶⁶⁾

효종은 김자점을 둘러싸고 나오는 이야기가 거짓되고 狂妄한 만큼 김세룡에게 염려치 말라고 했다. 하지만, 사문사 파동 이후 김자점을 둘러싼 대간의 비판을 두고 효종이 보인 태도는 1년 여전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탄핵 정국 당시 효종은 형식적이거나 탄핵을 주도한 대간을 체차하거나, 김자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상소에 대해 嚴旨를 내려 질책했다.⁶⁷⁾ 반면에 이때는

65) 『承政院日記』 113책, 효종 1년 6월 13일 10/31; 『承政院日記』 115책, 효종 1년 8월 7일 13/18.

66) 『承政院日記』 113책, 효종 1년 5월 18일 3/20. “答曰 省疏具悉辭意 前日李葩密疏之說 卽當嚴鞫查出 而予旣已洞鑑其虛偽狂妄無狀之甚 故置而不問矣 今又云云 殊甚駭異 可勝寒心哉 予意如此 卿等不須多辨 勿以爲慮”

67) 송준길은 김자점의 삭탈관작을 청하는 상소에서 김자점을 가리켜 ‘孽臣’이라고 비하

효종은 종사의 죄인 김자점의 처벌을 청하는 함계에 대해 ‘윤택하지 않는다 [不允].’, ‘고집부리지 말라[毋庸堅執].’와 같은 형식적인 답을 내릴 뿐이었으며, 김자점이 重罪를 지었다는 대간의 주장을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⁶⁸⁾ 김자점 문제를 대하는 효종의 태도 변화는 사문사 파동으로 인해 김자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에 기인했다. 사문사 파동은 효종이 즉위 후 처음 맞이한 중차대한 위기 상황이었다. 사문의 일을 앞두고 효종은 대신들 앞에서 자신의 불안한 심경을 직접 토로했을 정도였다.⁶⁹⁾ 즉, 소문의 진위와 상관없이 효종은 김자점을 왕위와 국가 전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에 충분했다.

1650년 9월, 효종은 김자점의 配所를 遠地인 全羅道 光陽으로 옮겼다. 이때 효종은 앞으로 김자점에 대한 추가 처분을 결코 없을 것이라고 신료들에게 공표했다.⁷⁰⁾ 이에 대간은 곧장 논계를 정지했는데, 대간이 함계를 정지한 이유는 ‘할 만큼 했다.’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⁷¹⁾ 당시 諫官들 사이에서 김자점에 관한 쟁론이 해를 넘겨서도 끝날 기미가 없자 時勢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절도안치와 원찬의 처분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임금의 뜻을 따라 김자점에 관한 논계를 정지하기로 했다.

했다. 이에 효종은 즉각 비답을 내려 송준길의 상소는 '진실로 매우 불가하다.'라며 질책했고, 다음날 송준길은 곧장 待罪했다(『承政院日記』 108책, 효종 즉위년 9월 18일).

68) 『承政院日記』 115책, 효종 1년 8월 4일 16/18 “榻前 大司憲所啓 金自點 絶島安置事 上曰 罪目雖重 既已遠竄 設或屈法伸恩 未爲不可矣”

69) 『孝宗實錄』 권 3, 효종 1년 3월 5일.

70) 『承政院日記』 115책, 효종 1년 9월 3일 6/14.

71) 『承政院日記』 효종 1년 10월 11일 26/27 “工曹判書朴遵疏曰……金自點之罪狀 國人之所共知 合啓之請 出於中外公共之論 而爭之累月 而爭之累月 只緣時勢涉於非便 停啓之意 兩行於搢紳之間 臣之妄料 亦以爲竄與置 無甚相遠 臣之妄料 亦以爲竄與置 無甚相遠 度諒物議 遂停其啓”

양사가 김자점에 관한 논계를 정지하자 이회보는 재차 상소를 올려 대간을 비판했다. 그는 대간이 논계를 정지함으로써 討逆의 대의를 잃었다고 주장했다.⁷²⁾ 효종은 이회보의 상소가 조정을 분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면서도 言路를 방해할까 염려되어 그냥 두겠다고 했다.⁷³⁾ 이처럼 효종이 김자점에 관한 논계 자체를 막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대간은 끝내 논계를 재개하지 않았고, 김자점에 대한 논의는 1년 가까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종합해 보면, 1650년 사문사 파동은 김자점과 청나라가 내통해 일어났다는 통설적 이해와는 거리가 멀었다. 청나라가 사문사를 파견한 당초 목적과 사문사의 활동 내용을 보면 김자점이 의도적으로 청나라를 끌어들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소문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계기로 조야에서 김자점은 역적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한편, 이를 계기로 김자점을 대하는 효종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었다. 탄핵정국 당시 형식적이거나 김자점에 대한 대간의 과격한 언사를 문체 삼았던 것과 달리, 사문사 파동 이후 풍문에 근거해 김자점을 역적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대간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는 효종이 사문사 파동을 통해 김자점을 현실적인 위협 요소로 인식한 결과였다. 결국, 형식적이거나 김자점을 보호했던 ‘선왕의 훈신’이라는 지위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逆獄

餘波

1651년(효종 2) 9월 2일, 효종은 세자의 冊禮를 맞아 김자점을 量移 하라고 지시했다.⁷⁴⁾ 효종의 결정에 양사는 1년여간 정지했던 김자점에 관한 논계를

72) 『承政院日記』 116책, 효종 1년 10월 25일 5/13 “工曹佐郎李回寶上疏……塞責發論 喪氣停啓 停啓有日 奮義無聲 討逆大義 節節俱失 一自失鞫之後 國之事機 莫不大謬 噫 猝覆之禍 迫在呼吸之間者 此非臺閣聲罪不嚴之致耶”

73) 『承政院日記』 116책, 효종 1년 10월 28일 2/19.

재개했다. 양사는 王法으로 보나 공론으로 보나 김자점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며 양이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했다.⁷⁵⁾ 김자점의 양이를 둘러싼 대간의 논쟁은 두 달여 간 이어졌고, 효종은 같은 해 11월 21일에 이르러서야 대간의 요구를 수용했다.⁷⁶⁾ 그런데 김자점의 양이를 둘러싼 논란이 종결된 지 이틀 뒤, 궁궐로써도 김자점을 파국으로 내모는 사건이 전모를 드러냈다.

1651년 11월 23일, 효종은 推鞠廳을 설치해 인조의 후궁이자 김자점의 사돈인 귀인 조씨가 왕실을 저주한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다. 귀인 조씨의 저주 사건은 崇善君 李澂(1639~1690)의 妻妾 갈등 때문에 드러났다. 승선군 부인 신씨는 시어머니인 귀인 조씨가 여종 英伊를 승선군의 첩으로 들인 것에 불만을 품고 이모이자 인조의 계비인 莊烈王后(1624~1688)에게 그 사실을 고했다. 장렬왕후는 영이를 붙잡아와 詰問했는데, 그 자리에서 영이는 귀인 조씨가 대비에게 불만을 품고 남몰래 致誠과 佛事를 올렸다고 진술했다.⁷⁷⁾ 효종은 內需司에 관련 내용을 조사하도록 했고, 내수사는 귀인 조씨가 대비뿐만 아니라 효종까지 저주했다는 결론을 내렸다.⁷⁸⁾ 내수사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효종은 추국청을 세워 궁 안팎에서 귀인 조씨의 저주를 도운 이들을 색출하도록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자점이 귀인 조씨의 저주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은 없었다. 하지만, 11월 26일에 귀인 조씨의 從兄이자, 평소 김자점과 친분이 있었던 前 監牧官 趙仁弼(?~1651)의 압송이 결정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조인필의 압송이 결정된 후 조인필의 두 사위인 海原副令 李暎과 진사

74) 『孝宗實錄』 권 7, 효종 2년 9월 2일.

75) 『承政院日記』 121책, 효종 2년 9월 24일 21/42 “大司憲尹順之 持平南重晦啓曰……今此金自點罪犯 實王法之所難貸 公論之所不容 當今流竄之典 亦出於聖上曲施之恩 而其爲失刑 固已大矣 日月未久 遷移內地 曠蕩之舉 雖出於因慶推恩 而三尺之法 其可壞乎”

76) 『承政院日記』 122책, 효종 2년 11월 21일 5/23.

77) 『孝宗實錄』 권 7, 효종 2년 11월 23일.

78) 『推案及鞫案』 권 7, 「신묘년, 김자점 등 역적 사건 심문 기록(1)」, ‘대신이 보고하다(11월 23일)’.

申壕가 장인 조인필과 김자점이 모종의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고변을 올렸다.⁷⁹⁾ 효종은 고변을 접수한 즉시 김자점을 광양에서 서울로 즉시 압송하도록 했고, 추국청으로 하여금 김자점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추국청은 김자점의 심복으로 지목된 전 진도군수 李孝性和 효명옹주의 여종 業伊에게서 김자점의 혐의 내용을 확보했다. 이효성의 진술에 따르면, 김자점과 김식 부자는 전라도의 육군과 수군을 동원해 원두표 등을 제거하기 위해 邊士紀와 安澈이 각각 전라 병사와 수사에 임명되도록 힘썼다.⁸⁰⁾ 업이는 귀인 조씨와 더불어 효명옹주 부부 등이 김식을 임금으로 삼기로 모의했고 김자점도 이에 동조했다고 진술했다.⁸¹⁾ 하지만, 이효성과 영이의 진술은 비합리적인 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들의 진술대로라면 김자점은 자신이 전라도 광양에 안치될 것을 수개월 전부터 예측했으며, 조정에서 축출당한 이후에도 조정의 인사 행정에 개입할 정도의 여력이 있어야 했다.⁸²⁾ 또한, 귀인 조씨 모녀가 혈육인 두 왕자가 아닌 김식을 왕위에 앉힘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 實益이 불분명했다.

김자점 부자는 1651년 12월 11일과 12일에 각각 서울로 압송되었다. 추국청은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김자점 부자를 심문했지만, 김자점 부자는 이효성과 업이의 진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혐의를 부인했다.⁸³⁾ 김자점의

79) 『推案及鞫案』 권 7, 「신묘년, 김자점 등 역적 사건 심문 기록(2)」, ‘이영과 신호가 고발하다(12월 3일)’.

80) 『推案及鞫案』 권 7, 「신묘년, 김자점 등 역적 사건 심문 기록(2)」, ‘이효성을 재심문하다(12월 5일)’.

81) 『推案及鞫案』 권 7, 「신묘년, 김자점 등 역적 사건 심문 기록(2)」, ‘업이를 심문하다(12월 7일).’; ‘업이를 재심문하다(12월 10일).’

82) 김자점의 아들인 김식이 한때 吏曹銓郎의 자리에 있었지만, 김자점이 문외출송 당하기 수개월 전에 병환을 이유로 체차 당했다(『承政院日記』 106책, 효종 즉위년 7월 14일 8/14).

83) 『推案及鞫案』 권 7, 「신묘년, 김자점 등 역적 사건 심문기록(3)」, ‘김식을 심문하다(12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진술에 하자가 있었지만, 추국청으로서 큰 문제는 아니었다. 추국청은 김자점을 제외한 사건관련자를 대상으로 刑訊을 시작했고 오래지 않아 역모를 입증할 자백을 받아냈다. 12월 13일, 김식이 한 차례 형문을 받은 끝에 혐의를 인정했다. 그에 따르면, 1650년 3월 즈음에 水原府使 邊士紀 휘하 군사를 동원하여 김자점의 정적이었던 元斗杓(1593~1664)와 산림 인사를 제거하고 나아가 승선군을 새 임금으로 세울 계획을 세웠다.⁸⁴⁾ 다음날에는 김식의 아들 김세룡이 네 차례 형문 끝에 역모를 피했다고 자백했다.⁸⁵⁾ 김세룡의 자백 내용은 모의한 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뿐 김식의 진술과 대동소이했다.

김식 부자의 자백을 확보한 추국청은 효종에게 김자점에게 형신을 가해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고 청했다. 효종은 김자점의 형문을 윤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김자점이 ‘宗社’를 보전한 大臣이었기 때문이었다.⁸⁶⁾ 하지만, 김자점이 역모를 피했다는 고변과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만큼 효종은 형문만 윤택하지 않았을 뿐, 김자점을 처분할 적당한 시기를 가늠하고 있었다.

12월 13일, 동지의금부사 洪茂績(1577~1656)은 효종에게 과거 선왕 인조가 편찮았을 때 書筵을 열었다는 이유로 김자점이 世子侍講院 下人을 가둔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효종은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서 아래와 같이 답했다.

월 12일) “父在東大門外時 何知謫往於全南道乎”

84) 『推案及鞫案』 권 7, 「신묘년, 김자점 등 역적 사건 심문기록(3)」, ‘김식이 자백하다(12월 13일)’.

85) 『推案及鞫案』 권 7, 「신묘년, 김자점 등 역적 사건 심문기록(3)」, ‘김세룡이 자백하다(12월 14일)’.

86) 『推案及鞫案』 권 7, 「신묘년, 김자점 등 역적 사건 심문기록(3)」, ‘김자점을 매질하며 심문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다(12월 15일)’.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외간의 말은 곧 사실은 아니나, 시강원의 하리를 잡아 가둔 일은 과연 있었다. 만약 선왕의 玉候가 편치 못하셨다면 내가 어찌 서연을 열 리 있었겠는가? 자점이 이로써 나를 誣陷하고자 한 것이었다.”⁸⁷⁾

효종은 김자점이 시강원의 하리를 가둔 것은 효종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벌인 일이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효종의 답변에 배석한 신료들은 김자점이 설사 역모를 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과거에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고 성토했다.⁸⁸⁾ 이런 가운데, 김자점은 12월 15일에 거행한 세 번째 심문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효종은 이용시를 시켜 ‘온 나라의 사람들이 의심하고 동요되어 절도로 쫓아내라 했음에도 오히려 극진하게 대했는데, 어찌 이와 같은 凶謀를 꾸밀 수 있는가?’라며 김자점을 질책했다.⁸⁹⁾ 김자점을 질책한 효종은 추관들에게 세자 시절 겪었던 또 다른 일화 하나를 들려주었다.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왕께서 일찍이 右相과 자점을 魚水堂에 불러 훗날의 일에 대해 정성스럽고 간절한 말씀을 하시니 자리를 메운 누구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가마는 우상은 대답하지 못하고 감격하여 우는 것을 그치지 않았으나 자점은 끝내 아무 말이 없었다. 자리를 파한 후에 선왕께서 나에게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늘 자점의 말과 낮빛을 보았느냐?’

87) 『推案及鞫案』 권 7, 「신묘년, 김자점 등 역적 사건 심문기록(3)」, ‘대신들과 의논하다 (12월 13일)’ “上曰 外間之言則不實 而捉囚講院下人之事 則果有之矣 若先王玉候未寧 則予豈有開筵之理 而自點欲以此陷予矣”

88) 『推案及鞫案』 권 7, 「신묘년, 김자점 등 역적 사건 심문 기록(3)」, ‘대신들과 의논하다 (12월 13일)’.

89) 『推案及鞫案』 권 7, 「신묘년, 김자점 등 역적 사건 심문 기록(3)」, ‘김자점을 심문하다 (12월 15일)’ “上令李應著特問自點曰 國人蓄疑於汝 皆欲撓動而絕島安置之請 亦不允許 只竄于光陽善地 使之安居食息 未久量移 國家之待汝極矣 何負於汝 而作此兇謀耶”

내가 뒷날의 일을 부탁하는데도 끝내 한 마디 없었으니 괴이하구나.”……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이미 신하 노릇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다.”⁹⁰⁾

효종은 선왕 인조가 뒷일을 부탁하는 자리에서 김자점이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갔다면서 이를 두고 선왕이 괴이하게 여겼다고 했다. 영의정 정태화는 ‘김자점이 시강원 하인을 가둔 일과 더불어 이미 불측한 마음을 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우의정 이시백 또한, 김자점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⁹¹⁾ 이처럼 효종은 선왕의 공신 김자점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형신을 가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 과거의 일을 소환해 김자점에 대한 조정의 공분을 끌어냈다. 결국, 김자점은 심문 결과와 상관없이 사실상 효종에 의해 불측한 마음을 품은 역적으로 확정되었다.

12월 16일, 효종은 김자점에게 형신을 가하여 자백을 받아내도록 지시했다. 이때 김자점의 아들 손자가 죄를 시인한 만큼 김자점을 즉각 처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효종은 자백 없이 처분을 내린다면 후에 없는 죄를 꾸짖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⁹²⁾ 결국, 김자점은 1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두 차례에 걸쳐 형문을 받은 끝에 아들 김식이 역모를 꾀했고 그 역시 계획에 동조했다고 자백했

90) 『推案及鞫案』 권 7, 「신묘년, 김자점 등 역적 사건 심문 기록(3)」, ‘김자점을 심문하다(12월 15일)’ “上曰 先王嘗招右相及自點于魚水堂 諄諄之教以日後之事 滿坐孰不涕泣 右相無以爲對感泣不已 而自點終無一言 罷出之後 先王謂子曰 爾見今日自點之辭色乎 予托以後日之事 而終無一言 極可恠也……上曰 其時已有不臣之心矣”

91) 『推案及鞫案』 권 7, 「신묘년, 김자점 등 역적 사건 심문 기록(3)」, ‘김자점을 심문하다(12월 15일)’ “鄭太和曰 自點囚禁侍講院下人之事 亦可見已懷不測之心矣……李時白曰 臣子聞托後之聖教 當何以爲心 而其時自點不但無感激之色 出去之後 亦無感激之言矣”

92) 『推案及鞫案』 권 7, 「신묘년, 김자점 등 역적 사건 심문 기록(3)」, ‘죄인처리에 대해 의논하다(12월 16일)’ “上曰 此則有不然者 後世若有鍛鍊成獄 而以此籍口 不爲取服 經先正刑 則豈不爲日後之大弊乎 自點刑推可也”

다.⁹³⁾ 김자점이 혐의를 인정하자 효종은 곧바로 그를 처형할 것을 지시했고, 김자점은 12월 17일에 軍器寺 앞에서 陵遲處死 당했다.⁹⁴⁾ 효종은 김자점을 처형한 직후 아래와 같은 전교를 내렸다.

전교하시기를 “(김자점의) 죄가 비록 극악하다고 하나, 靖社의 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점의 시신은 즉시 내어주어 매장하도록 該房에 말하도록 하라.”⁹⁵⁾

김자점은 대역죄를 범해 처형당한 만큼 그 시신을 八方에 조리돌렸어야 했다. 하지만, 효종은 선왕대에 사직을 안정시킨 공적을 고려해 김자점의 시신을 곧장 매장하도록 했다. 효종의 결정에 대간은 며칠간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효종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러한 조치는 앞서 효종이 김자점의 형문을 윤택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효종은 김자점을 대역죄인으로 처단했지만, 한편으로 그가 선왕의 공신이었다는 점을 드러내려 했다. 그 이유는 ‘역적 김자점’이라는 프레임이 선왕 인조대 문제로 소급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효종의 바람과는 달리 김자점이 대역죄로 처형당한 후 인조 연간의 정치 파동 특히, 강빈 옥사를 다시 들추어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1652년(효종 3) 2월 3일, 지평 李袞(1600~1684)는 강빈 옥사를 성립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생을 다시 국문해야 한다고 청했다. 이무는 신생이 김자점과 귀인 조씨의 모의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⁹⁶⁾ 2월 11일에

93) 『推案及鞫案』 권 7, 「신묘년, 김자점 등 역적 사건 심문 기록(3)」, ‘김자점의 최후진술 (12월 17일)’.

94) 『推案及鞫案』 권 7, 「신묘년, 김자점 등 역적 사건 심문 기록(3)」, ‘김자점을 신문하다 (12월 17일)’.

95) 『承政院日記』 122책, 효종 2년 12월 18일 4/9 “傳曰 罪雖極惡 靖社之功不可不念 自點屍身 卽爲出給 使之理葬事 言于該房”

96) 『孝宗實錄』 권 8, 효종 3년 2월 3일 “持平李袞上疏 其疏略曰……第今日逆趙之兇謀

는 사헌부 명의로 재차 상소를 올렸는데, 신생을 다시 붙잡아 귀인 조씨가 묻은 흉물을 찾게 할 것을 청했다.⁹⁷⁾ 이무의 상소는 김자점 역옥을 빌미 삼아 강빈 옥사를 다시 들추어내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효종은 이무가 김자점의 역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생을 거론한 사실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결국 임금을 시험하려 했다는 이유로 이무를 체차했다.⁹⁸⁾ 이틀 뒤, 효종은 이무가 신생의 일을 거론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면서 언관이라 하더라도 잘못이 있다면 죄를 물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⁹⁹⁾ 하지만, 효종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강빈 옥사에 관한 논의는 應旨上疏의 형식을 빌려 이어졌다.

1652년 4월 26일, 부교리 閔鼎重(1628~1692)은 가문의 해결 방안을 묻는 求言에 응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그 가운데 김자점 등이 강빈 옥사를 조작했다는 대목이 있었다. 민정중은 김자점과 귀인 조씨가 강빈 옥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의심스러운 단서를 확인하면 옥사에 희생된 이들을 伸雪하여 억울한 영령을 위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⁰⁰⁾ 효종은 민정중을 직접 불러들여 옥사 조작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 김자점과 귀인 조씨 등이 어떻게 선왕을 속이고 옥사를 조작할 수 있었겠냐며 조작설을 일축했

何其似辛生也 辛生尙保兇喘 安知非相通也 若不及時拿致辛生 嚴鞫得情 播告中外 明正其罪 則臣恐無以解愚民之惑 而永絕其根柢也”

- 97) 『孝宗實錄』 권8, 효종 3년 2월 11일 “憲府啓曰 詛呪謀逆 天下之惡一也 趙逆既伏其辜 辛生何物元惡 尙保其首領乎 王法之不行久矣 神人之交憤極矣……拿問辛生 一一掘發之後 明其罪惡 以正王法”
- 98) 『孝宗實錄』 권 8, 효종 3년 2월 11일 “答曰 依啓 徐必遠之護黨無忌 李表之投疏先試 俱極可駭 豈宜冒居臺閣乎 竝遞差”
- 99) 『孝宗實錄』 권 8, 효종 3년 2월 13일 “上曰 至於辛生 非干此獄 而必欲嚴鞫 要聽其言 其心所在 不難測 投疏先試 繼又論啓 李表特一奸人也……上曰 若以言官爲不可罪 則如廢朝時論廢母之言官 亦謂言官 而莫之罪乎”
- 100) 『孝宗實錄』 권8, 효종 3년 4월 26일 “副校理閔鼎重上疏曰……臣竊謂 姜逆之獄 初出於內間人 謂趙逆金賊實與其事 舉世聽聞 不無驚惑 向者二賊既敗 奸計畢露 卽今閭巷衆談 或以爲二凶奸巧 或能上蔽天聽也 然臣以爲 此非外人所可得知 殿下必已備燭 而周察之矣 如或其間有一毫可疑之端 則兄弟之倫 本之天顯 速宜伸雪 以尉九泉 以弭災戾”

다.¹⁰¹⁾ 이와 함께 효종은 김자점이 강빈 옥사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근거로서 소현세자와 그 아이들의 인물됨을 거론했다.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 만약, 昭顯이 살아 있을 때 이 변고가 있었다면 지금 두 역적의 흉계를 보건대 의심할 만한 것이 없지 않을 것이나, 소현이 이미 죽었고, 첫째 아이의 인물됨은 결코 基業을 부탁할 수 없다는 것을 곧 外人도 모두 알고 있는 바, 두 역적이 실로 뒷일을 염려하고 꺼림이 없을 텐데 어찌 계책을 사용하여 속이고 숨길 리가 있었겠는가?”¹⁰²⁾

효종은 소현세자와 그 첫째 아이의 자질에 문제가 있어 基業을 맡기기 어려웠다면, 김자점 등이 구태여 옥사를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소현세자가 평소 자질이 부족했으며, 이 때문에 선왕 인조가 소현세자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일도 거론했다.¹⁰³⁾ 효종의 발언은 강빈 옥사가 없었더라도 자연히 인조의 왕통이 효종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민정중의 상소는 효종의 逆鱗을 건드리기에 충분했는데, 효종은 ‘常法이라면 重罪를 면하기 어려웠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¹⁰⁴⁾ 하지만, 민정중의 상소는 구언에 응한 것인 만큼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¹⁰⁵⁾

101) 『孝宗實錄』 권8, 효종 3년 4월 26일 “上曰 已斷之獄 更無可言 而外人之以此噐噐先王亦嘗洞知矣 夫所謂致疑於趙逆金賊者 蓋其初疑未釋 而然也 此獄既非尋常之變 則豈一二凶徒 所可欺蔽先王者哉……或以爲 自點威脅 勒成斷案 豈有是理……此則非威脅可得 而世人之知與不知者 一辭致疑 吁亦不幸矣”

102) 『孝宗實錄』 권8, 효종 3년 4월 26일 “上曰……若使昭顯在世之時 已有此變 而以今兩賊兇計觀之 則或不無可疑 而昭顯既沒 一男兒爲人 決不可付托基業 則外人之所 共知兩賊實無所顧忌 有何用計欺蔽之理哉”

103) 『孝宗實錄』 권8, 효종 3년 4월 26일 “上又曰……予爲質於藩中 目見姜之所爲 則凶險無倫 而昭顯終不覺悟 是以 先王亦嘗痛恨昭顯之不明矣”

104) 『孝宗實錄』 권8, 효종 3년 4월 26일.

105) 하서정, 「孝宗대 정국변화와 災異 논의의 활용」, 『대구사학』 134, 2019, 13쪽.

효종으로서 향후 비슷한 방법으로 강빈 옥사를 둘러싼 논의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비상한 조치를 마련해야 했다.

1652년 5월 21일, 효종은 민정중의 상소는 배후가 있을 것이라면서, 강빈 옥사가 조작되었다는 설을 거론한 자들은 강빈이 살포했던 재물을 받아먹은 逆黨과 다름없다고 했다.¹⁰⁶⁾ 그로부터 10여 일 후, 효종은 강빈 옥사를 재론하는 자는 역당으로 간주해 다스릴 것이라는 전교를 内外의 관청에 내렸다.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 逆姜의 흉패함이 이와 같은데 지금 사람들은 선왕이 전후로 내리신 전교를 믿지 않고 伸救 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나는 심히 애석하게 여긴다. 비록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도 만약 역당의 일을 조정에 아뢰는 자는 逆黨으로 논하고 곧바로 국문하여 다스리도록 하라. 혹 순종치 않으려는 신하와 兇孽이 이 전교를 따르지 않는다면, 三司의 百工이 모두 爭執하여 逆黨으로 논함이 가하다. 이 뜻을 내외의 각 該司에 분부하도록 하라.”고 하니 여러 신하는 몸을 움츠리고 감히 한마디도 못하고 물러났다.¹⁰⁷⁾

자리에 배석한 여러 신하가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고 한마디도 못 했다.’라고 할 정도로 효종의 의지는 단호했다. 하지만, 효종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 또다시 응지상소의 형식을 빌려 강빈 옥사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06) 『孝宗實錄』 권 8, 효종 3년 5월 21일 “上謂諸臣曰 頃者閱鼎重以逆姜事陳疏 鼎重是後進之人也 豈知其時曲折乎 此決非鼎重一人之意 必有指喉者 而既是應旨進言 予故不問矣 概逆姜多散金帛 遍結黨援 故尚有戀戀不能忘者 乃作此等語耳... 今人之欲救逆姜者 豈不同歸於逆乎”

107) 『孝宗實錄』 권 8, 효종 3년 6월 3일 “上曰... 逆姜之兇悖如許 而今人之不信先王前後之教 必欲伸救者 是何意也 予甚痛之 雖閱累世之後 若以逆姜事 聞於朝者 論之以逆黨 直以庭鞠治之 或有強臣兇孽 不遵此教 則三司百工 皆即爭執 論以逆黨可矣 此意分付于 内外各該司 諸臣瑟縮 莫敢發一言而退”

1654년(효종 5) 7월 7일, 黃海監司에 재직 중이던 김홍옥은 水災와 旱災에 대처하기 위한 구언의 전교에 대하여 응지상소를 올렸다.¹⁰⁸⁾ 김홍옥은 災異를 맞아 비상한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큰 獄事 가운데 의심스러운 옥사를 다시 들여다볼 것을 청했는데, 그가 거론한 옥사는 바로 강빈 옥사였다. 김홍옥은 소현세자 사후 강빈이 귀인 조씨에게 밋보여 활동에 제약이 있었고, 강빈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모두 김자점과 귀인 조씨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⁰⁹⁾ 김홍옥의 상소는 앞서 민정중의 상소와 마찬가지로 김자점이 불측한 의도를 가지고 강빈 옥사를 조작했을 것이라는 의심에 기초했다. 그런데 김홍옥은 한발 더 나아가 또 다른 음모론을 제기했는데, 김자점의 사주로 소현세자의 두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이었다.¹¹⁰⁾ 효종은 2년 전 전교를 무시하고 강빈 옥사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담은 상소를 올린 김홍옥을 즉시 압송하도록 했다.

김홍옥은 1654년 7월 13일에 서울로 압송되어 곧장 심문에 임했다. 효종은 직접 仁政門에 나아가 김홍옥을 親鞫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홍옥은 응지상소를 올린 경위 등을 해명했다. 그에 따르면, 2년 전에 강빈에 관한 전교가 내려온 것은 알고 있었지만, 외방에서 錢穀에 관한 일이 바빠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또한, 옥사 조작설에 대해서는 지난날 권세를 지닌 간사한 자가 옥사를 조작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김자점도 강빈의 옥사를 조작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¹¹¹⁾ 친국을 마친 효종은 즉시 김홍옥을 형문할 것을 지시했는데, 영의정 김육과 좌의정 이시백 등은 김홍

108) 『孝宗實錄』 권 13, 효종 5년 7월 7일.

109) 『孝宗實錄』 권 13, 효종 5년 7월 7일 “臣竊念, 姜獄最是可疑者也……況昭顯卒逝之後則雖曰處禁中 而見忤於趙賊 別處一殿 有若囚繫 內外隔絕 防守甚嚴 雖欲行兇 亦不可得而咀呪之狼藉 此時爲甚 豈非可疑之大者乎……其他可疑之迹 不可殫記 而趙賊搆捏於內 逆點鍛鍊於外 傳會成獄 終至賜死 闔門老少 夷滅無遺 吁亦慘矣”

110) 『孝宗實錄』 권 13, 효종 5년 7월 7일 “且昭顯兩兒之死 無非自點之媒孽……其到配未久 接踵而死 人皆藉藉以爲 自點之指嗾”

111) 『推案及鞫案』 권 7, 「갑오년 신문기록」, ‘김홍옥을 심문하다(7월 13일)’.

욱의 주장이 궤이하지만, 그를 역률로 다스린다면, 임금의 덕이 손상될 수 있다며 만류했다.¹¹²⁾ 대간 역시 김홍욱의 국문을 정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대사헌 吳堧(1587~1666)은 효종의 강경한 태도에 제대로 된 논계를 올리지 못했다.¹¹³⁾ 결국, 김홍욱은 7월 13일과 14일 이틀간 무려 여섯 차례 형문을 받은 끝에 物故되었다. 이후 효종은 김홍욱의 관직을 삭탈하는 한편, 그의 형제와 인척을 영구히 영구히 禁錮 하도록 했다.¹¹⁴⁾

김홍욱은 앞서 이무와 민정중과 달리 강빈 옥사 조작설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효종의 단호한 조처는 구언에 응한 상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정치 관례를 뒤흔든 일로써 言路를 탄압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¹¹⁵⁾ 그런데도 효종이 강경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김홍욱이 효종의 역린을 정통으로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김홍욱은 민정중과 마찬가지로 응지상소를 방패 삼아 강빈의 옥사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행위만으로도 김홍욱은 효종이 2년 전에 내린 전교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과 다름없었다. 문제는 그가 소현세자의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었다. 김홍욱은 소현세자 두 아들이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 배후로 김자점을 지목했다. 효종으로서 소현세자의 막내아들이 생존해 있던 당시 상황에서 김홍욱의 주장이 미칠 파급력은 예측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효종은 차후 제2, 제3의 김홍욱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만 했고 결국, 2년 전의 전교대로 김홍욱을 강경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었다.

종합해 보면, 효종은 귀인 조씨의 저주 사건의 결과 김자점을 제거할 수

112) 『孝宗實錄』 권 13, 효종 5년 7월 13일 “領議政金堧 左議政李時白 右議政沈之源等曰 弘郁疏語無倫 雖極怪妄 而若直以逆律論之 臣等竊恐有傷於聖德也”

113) 『孝宗實錄』 권 13, 효종 5년 7월 14일. “命大臣及禁府諸臣 鞫弘郁于闕庭……旨李行進傳批答 仍語堧曰 天怒方盛 不可連啓 堧曰 余本欲一啓即停”

114) 『孝宗實錄』 권 13, 효종 5년 7월 17일.

115) 오항녕, 앞의 글, 1993, 32~33쪽; 하서정, 앞의 글, 2019, 19~20쪽.

있었다. 옥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효종은 김자점이 극악무도한 역적임을 부각하면서도 한편으로 선왕 인조 대에 종사를 구한 공신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이는 김자점 옥사와 선왕 인조 대의 정치 파동을 분명히 구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김자점 역옥의 여파로 강빈 옥사 조작설이 제기되었고, 나아가 강빈 伸冤論이 고개를 들었다. 효종으로서 자신의 정통성 문제와 얽혀있었던 강빈 옥사가 다시 들추어지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고, 공론을 탄압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정통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했다.

효종은 병자호란 이후 무너진 국가 질서를 재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왕위에 올랐다. 대다수 사류 또한 큰 틀에서 효종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양자는 병자호란으로 허물어진 충효의 가치와 승명배정의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는 데에 공감했다. 하지만, 인조가 남긴 정치 유산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해가 달랐다. 효종 즉위 직후 일어난 김자점 탄핵 여론은 인조가 남긴 부정적인 정치 유산을 청산해야 한다는 여론의 산물이었다. 효종으로서 집권 초기 여론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탄핵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문제는 효종이 인조와 김자점의 파행적인 국정 운영의 결과 왕위에 올랐다는 점이었다. 효종으로서 선불리 김자점을 처리한다면, 탄핵 여론이 자칫 자신에 대한 정통성 시비로 확산하지 않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김자점이 제거되는 일련의 과정은 정통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지니고 있었던 효종이 정국 운영의 동력을 확보해나가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효종은 김자점 문제를 최대한 자신의 정통성 시비로 비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풀어가려 했다. 탄핵정국 당시 효종은 ‘공론의 수용’을 명분 삼아 김자점을 처분했다. 이를 통해 명목상이지만 김자점을 선왕 인조의 훈신으로 남겨두어 탄핵 논의가 선왕 인조 대의 정치 사건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 하지만, 1650년 사문사 파동을 전후해 효종은 김자점을 국가의 안위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1651년 김자점이 역모를 꾀했다는 고변은 김자점에 대한 효종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고 결국, 김자점은 역모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처형당했다.

옥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효종은 김자점을 극악무도한 역신으로 몰아세워 처분했지만, 한편으로 그가 인조의 공신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효종으로서 ‘역적 김자점’이라는 프레임이 선왕 인조 대 정치 사건으로 소급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김자점이 처형당한 후 인조 대의 정치 파동 특히, 강빈 옥사를 다시 조사하고 나아가 강빈을 신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결국 ‘역적 김자점’ 프레임과 인조 대 정치 사건을 분명히 구분하려 했던 효종의 시도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효종은 강빈 옥사에 관한 논의를 제기한 자를 역당으로 처분한다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1654년에 일어난 김홍욱 옥사는 효종이 그간의 정치적 관례를 깨뜨리고 자신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논의를 틀어막기 위해 단행한 비상조치였다. 하지만, 김홍욱의 옥사를 통해 효종이 얻은 정치적 실익은 많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효종은 ‘언론을 탄압한 국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강빈 옥사를 둘러싼 논란은 효종의 통치력이 한계에 봉착할 때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여지를 남겼다.

1.

- 『朝鮮王朝實錄』(국사편찬위원회, sillok.history.go.kr)
『承政院日記』(국사편찬위원회, sjw.history.go.kr)
『備邊司謄錄』(국사편찬위원회, db.history.go.kr)
『推案及鞫案』(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2-CAB-1101>)
『國朝寶鑑』(고전번역원, db.itkc.or.kr)
『宋子大全』(고전번역원, db.itkc.or.kr)
『白湖全書』(고전번역원, db.itkc.or.kr)
『石屏卷』(고전번역원, db.itkc.or.kr)
『燃藜室記述』(고전번역원, db.itkc.or.kr)
『黨議通略』(장서각, jsg.aks.ac.kr)

2.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국역)추안급국안』 19:20:21. 이선아 역주, 흐름, 2014.

3.

- 김용흠, 『朝鮮後期 政治史 研究 I - 仁祖代 政治論의 分化와 變通論』 혜안, 2007.
우인수, 『朝鮮後期 山林勢力研究』, 일조각, 1999.
이기순, 『仁祖孝宗代政治史研究』, 국학자료원, 1998.
이영춘, 『朝鮮後期 王位繼承 研究』, 집문당, 1998.
이희환, 『조선정치사』, 혜안, 2015.

차문섭, 『朝鮮時代 軍制研究』, 단대출판부, 1973.

4.

이명제, 『17세기 청·조선 관계 연구』,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5.

- 김선혜, 「入關 前後 淸과 朝鮮의 通婚과 侍女 問題」, 『중국사연구』 91, 2014.
- 김세봉, 「仁祖 孝宗代 山人勢力의 形成과 進出」, 『동양학』 24, 1994.
- 김세봉, 「孝宗初 金自點 獄事에 대한 一研究」, 『사학지』 34, 2001.
- 김세영, 「朝鮮 孝宗朝 北伐論 研究」, 『백산학보』 51, 1998.
- 김용덕, 「昭顯世子研究」, 『사학연구』 18, 1964.
- 김용흠, 「조선후기 역모 사건과 변통론의 위상-김자점 역모 사건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0, 2006.
- 백옥경, 「朝鮮後期 譯官의 政治的 動向研究」, 『국사관논총』 72, 1996.
- 송양섭, 「孝宗의 北伐구상과 軍비증강책」, 『한국인물사연구』 7, 2007.
- 오수창, 「仁祖代 政治勢力의 動向」, 『한국사론』 13, 1985.
- 오항녕, 「朝鮮 孝宗代 政局의 變動과 그 性格」, 『태동고전연구』 9, 1993.
- 우경섭, 「인조대 ‘親淸派’의 존재에 대한 재검토」, 『조선시대사학보』 81, 2017.
- 우인수, 「朝鮮 孝宗代 北伐政策과 山林」, 『역사교육논집』 15, 1990.
- 이왕무, 「昭顯世子嬪 姜嬪의 獄事와 伸冤」, 『역사와 담론』 69, 2014.
- 이희환, 「효종대의 정국과 북벌론」, 『전북사학』 42, 2013.
- 정만조, 「17세기 중반 漢黨의 정치활동과 國政運營論」, 『한국문화』 23, 1999.
- 차문섭, 「朝鮮朝 孝宗의 軍備擴充(上,下)」, 『단국대학교논문집』 1.2집, 1967.
- 최완기, 「17世紀의 危機論과 孝宗의 經濟政策」, 『국사관논총』 86, 1999.
- 하서정, 「孝宗대 정국변화와 災異 논의의 활용」, 『대구사학』 134, 2019.
- 한지희, 「조선후기 孝宗代 政治論과 정국 동향-是非明辨論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41, 2010.

허태용, 「동아시아 중화질서의 변동과 조선왕조의 정치사상적 대응」, 『역사학보』 221, 2014.

Abstract

The process of purging Kim Ja-jeom and legitimacy issues in the early days of King Hyojong's reign

Choi Kijun (Choi, Ki Jun)

King Hyojong(孝宗, r.1649-1659) ascended the throne with the task of rebuilding the collapsed national order after the Manchu War of 1636. However, the situation facing King Hyojong meant it would be difficult to carry out the task of rebuilding the nation. As soon as King Hyojong ascended the throne, public opinion of impeachment against Kim Ja-jeom (金自點) was aroused, which was the result of calls to liquidate the political legacy of King Injo (r.1623-1649). Kim Ja-jeom symbolized Injo's negative political legacy, he was no different from the public enemy of Saryu(土類). If Hyojong had eliminated Kim Ja-jeom at the beginning of his reign, he could have received the support of a Saryu. However, the problem was that Hyojong ascended to the throne because of the political upheaval that occurred under the leadership of Injo. Kim Ja-jeom was at the center of the "Crown-princess Kang(姜嬪)'s Oksa," which was directly or indirectly connected to Hyojong's legitimacy problem. For that reason Hyojong had to remove Kim Ja-jeom in preparation for the number of various cases in consideration of political repercussions.

Hyojong ousted Kim Ja-jeom under the pretext of 'acceptance of public opinion(公論)'. but nominally left him as a contributor to the late Injo.

This act prevented the discussions about impeaching Kim Ja-jeom from turning into a political issue during Injo's reign. However, in the early 1650s, the rumor that Kim Ja-jeom attracted the Qing Dynasty and put Joseon at risk changed Hyojong's perception of Kim Ja-jeom. With the majority of public opinion branding Kim Ja-jeom as a rebel, Hyojong also appeared to be aiding and abetting the groundless criticisms and demands for punishment against Kim Ja-jeom. Eventually, in December 1651, Kim Ja-jeom was executed for plotting to commit treason. While dealing with "Kim Ja-jeom's Oksa(獄事)", Hyojong accused the Kim Ja-jeom of being a heinous rebel but revealed that he was a contributor to the Injo. The reason was that Hyojong did not want the "Rebel Kim Ja-jeom" frame to be traced back to Injo's reign and reexamine the political turmoil.

But, contrary to Hyojong's wishes,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the "Crown-princess Kang's Oksa" was manipulated based on the "Rebel Kim Ja-jeom" frame, and further discussions arose about how the grudge of "Crown-princess Kang" should be resolved. Hyojong needed a contingency in case the "Oksa of Crown-princesses Kang," intertwined with his legitimacy issue, was revealed again. In 1654, the "Kim Hong-wook(金弘郁)'s Oksa" was an event that officially declared that he could be punished for treason when revisiting future discussions on the "Crown-princess Kang's Oksa" Through this, discussions that could threaten Hyojong's legitimacy appeared to have subsided for a while, but Hyojong's "press view(言論觀)" would be criticized inevitably. Thus, discussions over the legitimacy of Hyojong could be raised at any time.

Key Words : King Hyojong(孝宗), Kim Ja-jeom(金自點), Kim Ja-jeom's Oksa, Kim Hong-wook(金弘郁), Crown-princesses Kang(姜嬪), Crown-princesses Kang's Oksa, King

孝宗初 金自點 제거 과정과 효종의 정통성 문제

Injo(仁祖), legitimacy, public opinion(公論), press view